

의안번호	제 93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2월 일 (제 296 회)

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2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9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2월 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(2010.6.30)되어
- 근거법령이 없고 자문기능만 있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-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15조
-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15조
-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제5조, 제8조 및 제10조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

제20조 (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지방녹색성장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**대통령령으로 정한다.**

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

제15조(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**법 제20조**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「**지방자치법 시행령**」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(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·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)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시·도 소속 실장·국장급 공무원 중 시·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
2. 기후변화, 에너지·자원, 녹색기술·녹색산업,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
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지방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3.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속가능발전법

제7조(국가·지방이행계획의 협의·조정)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0조 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이하 "국가이행계획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이하 "지방이행계획"이라 한다)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·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·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는 그 협의·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또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5조(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)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.

□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.

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체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녹색성장·산업 분과위원회 : 지방추진계획, 재정, 법제도 및 녹색기술,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
2. 기후변화·에너지 분과위원회 :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,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,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
3. 녹색생활·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, 녹색생활 확산, 녹색 국토, 녹색건물,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, 물관리 등의 분야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,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.